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**충청북도의회**  
**정책복지위원회**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0년 11월 20일

○ 회부일자: 2020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, 「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의거 ‘충북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’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: 충북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
- 위탁기간: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
- 위탁기관: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
- 위탁방법: 공개모집
- 위탁주요사무
  -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 관리
  -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·교육
  -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조사
  -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,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  -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
  -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-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법적근거

- 본 동의안은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와 「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사항이며,
- 동 시설의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는 적절함.

### ○ 종합의견

-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통한 상담, 현장조사를 통한 위기 개입, 치료서비스, 응급보호, 사후관리 등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며,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서 기초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이 위탁 운영한다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최근 인천 라면형제 화재 사건 등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아동의 활동범위가 한정되고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은 필요하며 타당함.
- 다만, 현재 운영 중인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외 2개소의 운영실태 및 성과를 파악하여 수탁자 선정 시 활용하고, 수탁자 선정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투명성,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.

### □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

- 수탁자: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(대표 조성천)
- 관할구역: 청주, 증평, 진천, 음성
- 직원현황: 24명(관장1, 상담원20, 심리치료사2, 사무원1)
- 그간 운영경과
  -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지정(2000.09.25.~2015.11.15.)
  -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위탁(2015.11.16.~2018.10.01.)
  -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 위탁(2018.10.02.~2023.10.01.)

### □ 충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

- 수탁자: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(대표 조규만)
- 관할구역: 충주, 제천, 단양
- 직원현황: 16명(관장1, 상담원12, 심리치료사2, 사무원1)
- 그간 운영경과
  -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(2013.10.26.~2016.10.25.)
  -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(2016.10.26.~2021.10.25.)

### □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

- 수탁자: 사회복지법인 명지원(대표 정국명)
- 관할구역: 보은, 옥천, 영동, 괴산
- 직원현황: 11명(관장1, 상담원6, 심리치료사3, 사무원1)
- 그간 운영경과
  - 사회복지법인 명지원에 지정(2006.12.25.~2015.11.15.)
  - 사회복지법인 명지원에 위탁(2015.11.16.~2018.10.01.)
  - 사회복지법인 명지원에 위탁(2018.10.02.~2023.10.01.)

## □ 아동복지법

**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**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,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28., 2019. 1. 15., 2020. 4. 7.>

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. 15.>

## □ 아동복지법 시행령

**제44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)**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. <개정 2019. 7. 16.>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8. 3. 6.>

1.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
2.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
3.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
4.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,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 의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. <개정 2019. 7. 16.>

## □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

**제5조(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)** ①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. 다만, 도지사는 시·군별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·군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## 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**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**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

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
5. 그밖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무

**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** ① 도지사는 제4조 제1항의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